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38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이준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21. 1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는 2015. 12. 10. C에게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0. 12. 1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49386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17. '피고는 원고에게 17,685,722원과 그중 9,914,431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2.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76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3. '피고는 원고에게 2,031,584원 및 위 금원 중 1,642,932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3. 20. 확정되었다.

마. 한편 F는 2021. 9. 5.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 F'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G(2022. 6. 17. 사망)과, 자녀들인 H, I, 피고, C가 있었고, C의 법정 상속지분은 2/11이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2.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상속분할 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에 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켜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우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주로 망 F 사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망 G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채무자인 C는 김포시 J을 주소로 거주하면서 피고와 왕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C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1992. 7. 3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약 3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망 F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위 부동산에서 망 F와 망 G를 부양하면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망 F는 위 부동산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F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모친인 망 G를 부양하면서 거주하였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던 H, C, I 등 다른 형제들은 망 G의 안정적인 거주 및

피고의 망 G에 대한 부양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추심의 기회 및 형평의 원칙을 실현할 만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매우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혜수

별지